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 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②”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⑤계약기간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표준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표준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은 서비스 이용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3. 기관은 이용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표준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의 명시된 기간만큼으로 한다.
4. 계약내용변경사항(계약 기간의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변경 또는 비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전달 후 7일이내에 변경된 계약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별[별지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단위: 원 /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기준)

등 급	2024년 수가	일반 (본인부담20%)	40%감경 (본인부담12%)	60%감경 (본인부담08%)
1등급	90,450	18,090	10,854	7,236
2등급	83,910	16,782	10,069	6,713
3~5 등급	79,240	15,848	9,509	6,339

2)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구 분	일반(20%)		
	본인부담금	식간식비	합계(원)
1등급	542,700	210,000	752,700
2등급	503,460	210,000	713,460
3,4,5등급	475,440	210,000	685,440

구 분	감경 12%		
	본인부담금	식간식비	합계(원)
1등급	325,620	210,000	535,620
2등급	302,076	210,000	512,076
3,4,5등급	285,264	210,000	495,264

구 분	감경 8%		
	본인부담금	식간식비	합계(원)
1등급	217,080	210,000	427,080
2등급	201,384	210,000	411,384
3,4,5등급	190,176	210,000	400,176

* 식간식비 : 식사(1식)=2,000원 / 간식(1일)=1,000원 / 이미용비 = 무료

3) 축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구분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초진비용 (17,610)	3,520	2,110	1,400
재진비용 (12,590)	2,510	1,510	1,000

※ 의료비, 기타 물품구입비등 개인(보호자)요청에 의한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됨.